



즐거운 체육! 건강한 시민! 행복한 구리!

구리시체육회 수탁체육시설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2025. 05.



구리시체육회
GURI CITY SPORTS COUNCIL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정의)	3

제2장 CCTV 설치 시 준수 사항

제4조(영상정보기기책임자의 책임과 직무)	4
제5조(CCTV 현황 관리)	4
제6조(안내판의 설치)	4
제7조(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5

제3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

제8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6
제9조(영상정보 등의 유출방지)	6
제10조(보호조치 등)	7

제4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 사항

제11조(수집의 제한)	7
제12조(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7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8
제14조(보유 및 삭제)	9
제15조(사무의 위탁)	9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9
제17조(준용 규정)	9

구리시체육회 수탁체육시설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25. 5.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리시체육회가 수탁 운영하는 4개 체육시설(구리왕숙체육공원, 구리시립테니스장, 구리시민운동장, 구리시야구장)에 설치·운영되는 CCTV의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 정보 제공, 법규 위반 단속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탁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정리"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용망"이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통신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통신망을 말한다.
7. "공중망"이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망 등을 말한다.
8. "영상정보기기책임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영상정보기기운영자"란 "영상정보기기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CCTV 설치 시 준수 사항

제4조(영상정보기기책임자의 책임과 직무)

- ①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소속 부서의 직원을 선임하여 영상정보기기 운영자로 운영·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처리 실태조사, 개선사항 등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③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와 피해구제,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④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⑤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제5조(CCTV 현황 관리)

- ①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별표 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 부착장소
 5. 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 및 삭제 방법, 보관장소
- ②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CCTV 설치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 ①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 수집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출입구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설치 사실을 공지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7조(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 ①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CCTV 설치목적 변경 및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 나.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 ②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의 목적
 3. 사업의 내용
 4. 설치장소(구축장소)
 5. 의견제출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구리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

제8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CCTV의 설치 시 목적에 부합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 ③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 등의 유출방지)

- ①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②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해킹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용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현장여건 등에 의해 전용망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공중망을 이용하여 영상전송과 제어를 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CCTV 망은 내부행정망과 분리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영상정보 유출 방지 조치에 대한 최선의 보호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가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 잠금장치 등의 물리적 보안장치 및 저장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조치 등)

- ①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영상정보기기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③ 영상정보기기의 접근권한을 가진 책임자 및 담당자는 영상저장장치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비밀번호는 90일마다 변경관리 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기준하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니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 사항

제11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사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의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영상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받는 자
- 영상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제공하는 영상정보의 파일 명칭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

익의 내용

2. 정보 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조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영상정보기기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 할 수 있다.
- ③ 영사정보의 제공 시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 처리 하고,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영상정보 제공자에게 열람·제공한 영상자료 보유기간 만료 및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제공한 기관에 회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기기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사정보기기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이외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보유 및 삭제)

- ①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 ③ 파기하는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영상정보기기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5. 5. 20.)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구리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변경 및 개정 사항은 구리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CCTV 설치·운영 관리 카드

1. CCTV 설치의 목적

설치목적	
------	--

2. CCTV 관리사항

운영기관	관리방법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연락처
위탁업체명	위탁업체 연락처

3. CCTV 시설 현황

① CCTV 설치 정보

설치대수	대	작동방식	고정식(대), 이동식(대)
촬영범위		촬영시간	시간
설치위치	별 첨	다기능 CCTV	대

② CCTV 시설 세부내역

종류	일반CCTV(대) 네트워크(IP) 카메라(대)		
장비기능	음성녹음(대)	확대(ZOOM)기능(대)	회전기능(대)
통신방식	전용선, 자가망 등	저장방식	

③ CCTV 설치 안내판 정보

안내판설치여부	설치장소	별 첨
홈페이지공개	설치개서	개

④ CCTV 영상정보 세부내역

정보보관기간	()일	보관장소	
보관방법	파일, CD, DISK	열람장소	
파기방법	자동파기	출입통제	

CCTV 설치 안내판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촬영범위:
4. 촬영시간:
5.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

※글씨크기 및 색깔 등은 설치장소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CCTV 영상정보 제공 관리대장

연번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영상정보 파기(자동/ 수동)	기간	비고
1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2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3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4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5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6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7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